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1. 환경법

환경법의 공해방지법에서 출발하여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으로 확대 제정되었다.

이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추가 제정되었고, 양돈분뇨와 직접 관련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원이 되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리, 별도로 1991년 3월 8일 제정되어 현재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부터 환경관리공단법까지 42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동 수 차장대우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

## 2. 양돈분뇨관련법 변천

오물청소법('61-보사부), 환경보전법('81-환경청), 폐기물관리법('86-환경청), 수질환경보전법('91-환경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1-환경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4-환경부)로 변천되었으며, 주요 내용변화로는 축산폐수 외에 가축분뇨 용어정의 추가('99), 액비 살포면적고시 및 액비 살포면적 확보의무('99), 저장액비화용어를 액비화로 포괄 변경(2002), 퇴비화도 퇴비저장시설 의무화(2003) 등이 있었다.

## 3. 법규용어

가축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

# 특 집

며,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으로서 자원화와 정화처리 대상물이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로서 축사를 말하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축산폐수(가축분뇨)를 퇴비·액비·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시·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4. 허가·신고

사육시설(축사) 면적에 의해 대상이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사육시설 면적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

구 분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면적(㎡)	사육두수	면적(㎡)	사육두수	
돼지 사육 시설	특정지역	500이상	357두이상	50~500	36두~357두
	일반지역	1,000이상	715두이상	50~1,000	36두~715두

\*사육두수는 참고

<표 2>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 mg/l)

지 역	구분 항목	허가대상 규모	신고대상 규모
		특정 지역	BOD
	SS	50이하	150이하
	총질소	260이하	-
	총인	50이하	-
일반 지역	BOD	150이하	350이하
	SS	150이하	350이하

\*사육시설 면적 50㎡이상 140㎡미만은 BOD 1,500mg/l 이하

<표 3>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

(단위 : ㎡/두)

구 분	초 지	농경지	
		논	밭
돼지	340 이상	640 이상	420 이상

## 5. 처리시설별 규제(기준)

가.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표 2>

나. 자원화처리시 설치기준

- 퇴비화시설: 발생한 축분만인 경우는 1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및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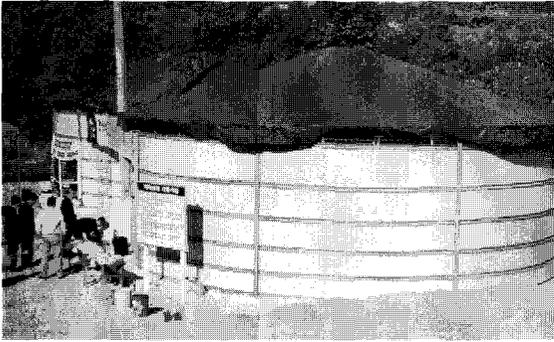
- 액비화시설: 축사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6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며,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지확보(확보된 경지중 특정토지에 과잉 살포되지 않아야 함)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환경부 고시 제 1999-110호)<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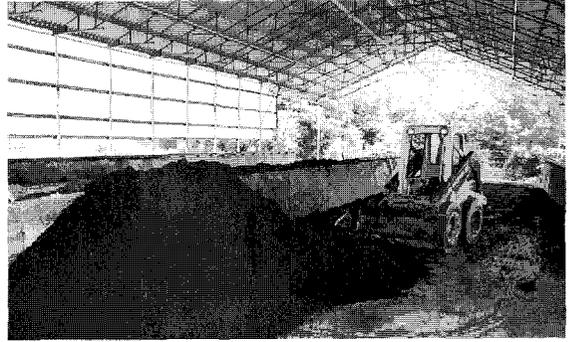
## 6. 향후 예측

가. 축산분뇨는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며, 적절히 재활용될 경우 환경친화적 유기영농비료로 기능이 있으나, 부적정관리시 오염원으로 작용, 수질오염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서, 현재 액비화농가는 경지를 확보토록 관리하는 반면, 퇴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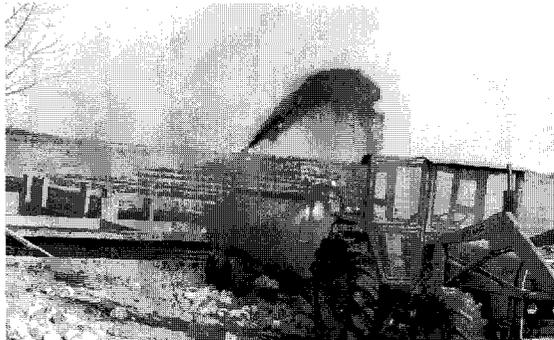
최근 변화되는 양돈업계 제도·변경, 알고 대처하자



▲<자료사진> 액비 저장탱크(경북 구미)



▲<자료사진> 돈분장 퇴비



▲<자료사진> 액비 살포 전경



▲<자료사진>부숙되고 있는 돈분슬러리

농가는 살포토지 확보 의무가 없기에 퇴비야적 방치 또는 집중적 과다살포로 환경오염 우려가 상존한다고 판단, 점차적으로 퇴비화처리에 대하여도 축분퇴비 생산 처분기록 및 살포토지 확보 의무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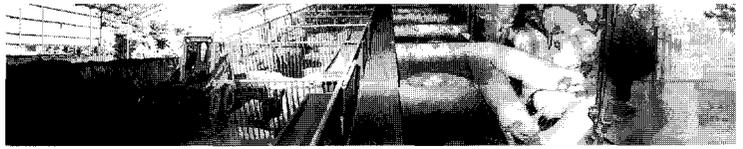
나. 행정적 기준적용은 양돈농가는 50두(일일 0.4톤 발생)부터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활용업자는 (퇴비·액비) 일일 1톤 이상부터 신고토록 되어 있어 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 강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연중 365톤

미만의 액비를 이용하는 경종농가(현재 액비탱크 200톤 규모보유)도 재활용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경종농가의 액비이용이 불편해져 양돈액비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시·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을 늘여 비점(非占)오염원을 줄이고자, 공공처리시설 설치확대와 기능활성화를 4대강 수계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여, 현재의 축산분뇨 분리 저장시설 의무를 줄이고

일괄수거후 공공처리시설에서 고액분리후 액상물은 정화처리, 고형물은 퇴비화처리 하며, 소규모 농가의 처리비 부담을 경감토록 수거비 지원도 예상됨

라. 특정지역의 허가대상농가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질소 260ppm, 총인 50ppm 방류수 수질 규정은 수계의 부(富)영양화 문제 대처를 위하여 특정지역의 신고규모농가와 일반지역의 허가대상농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양돈**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과 추진절차



박 순 철 대리  
대한양돈협회 지도팀

## 1. 서론

지난 17년 동안 우리 양돈농가들은 물론, 전국 축산농가들의 숙원사상이었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종별 생산자단체들의 각고의 노력과 산·관·학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5월에 공포가 되었다.

이로 인해 WTO체제 하에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품목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미흡하나마 향후 우리 양돈농가들이 주도적으로 국내 양돈산업을 이끌어 가고, 국내 양돈산업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축산자조금법의 주요내용과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의 주요내용

### 가. 자조활동자금의 재원 및 용도

축산단체는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축산업자에게 자조활동자금을 거

최근 변화되는 양돈업계 제도 · 변경 양고 대처하자

<표 1> 임의 양돈자조금사업 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농가 거출금	174	166	104	116	84	102	81	93	209	463	194	(318)
정부 지원금	82	48	-	22	42	51	41	46	99	392	167	(318)
집행실적	245	149	83	138	126	153	122	139	297	838	337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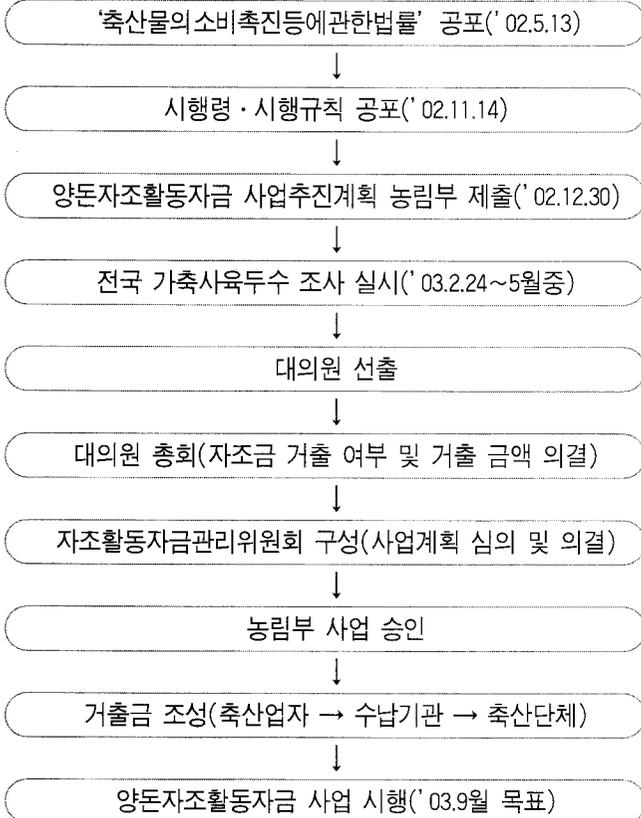
출할 수 있다.

이렇듯 자조활동자금은 ①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②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③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④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자조활동자금은 ① 축산물 소비홍보, ②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③ 축산물의 자율

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축산자조금제도 시행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목표>



나.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및 조성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장관에게 미리 자조활동자금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



# 특 집

〈표 2〉 의무 자조금사업 시행시 수입 계획(출하돈 1두당 400원을 거출할 경우)

	산 출 근 거	조성액
농가 거출금	(전년도 도축두수)×(거출액) - (수수료-3%기준) 15,000천두 × 400원/두 - 1억8천만원 = 약 60억원	60억원
정부 지원금	농가 거출금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 : 100% 보조	60억원
지출금액	(농가 거출금) + (정부 지원금) + (기타 지원금 및 수익금)	120억원

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농림부의 승인이 나면, 축산단체는 재원확보를 위해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앞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는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양돈협회에서는 1992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000년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 의하여 임의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양돈농가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사육두수별로 거출금을 부과하고, 비회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 확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납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보니 〈표 1〉과 같이 거출금의 규모가 적으며, 이로 인해 TV광고와 같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 모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회원들은 부과된 금액외에 별도로 모금액을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축산자조금법 제정으로 인해 축산단체는 무임승차자를 없애고, 〈표 2〉와 같이 농가 거출금, 정부 지원금 등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전체 축산농가에게 의무적으로 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3. 축산물의소비촉진 등에관한법의 추진절차

#### 가. 자조활동자금 설치 추진 경과 및 현황

축산자조금법이 제정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양돈협회에서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2년 11월에 공

포됨에 따라 축산자조금제도의 조기 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축종보다 앞서 같은 해 12월에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며,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현재 전국 시·군에서는 가축(한우, 양돈, 산란계) 사육두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축종별 사육두수조사 조사가 완료되면, 축산업자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선출구별 축산업자수 및 가축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양돈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총수를 200명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나.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 설치 및 대의원 선출**

위와 같이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에 따라 선출구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주요 선거절차 수립 등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하며,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설치된 준비위원회는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을 한다.

참고로 대의원 총회전까지의 주요 선거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선거권자 확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일 30일전) → ② 선거 안내(선거취지, 대의원 후보자 등록) → ③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투표일 15일전) → ④ 선거공고(투표일시·장소, 후보자 명부, 선출구별 대의원수 등) → ⑤ 대의원 선거 및 개표 → ⑥ 대의원 총회 소집(개최 10일전) → ⑦ 대의원 총회(거출금 납부 여부, 거출 금액 결정)

**다.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

또한, 선출구별로 대의원을 선출을 한 후에는 자조금 거출 여부 및 거출금액을 의결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여야 한다.

거출금을 납부하기로 의결이 되면 거출금액을 의결하여야 하며, 거출금의 한도액은 농림부 장관이 발표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

조활동자금 관리사무국을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과반수는 반드시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후, 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농림부 승인을 받고, 수납기관(도축장)에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위탁하여 축산업자의 거출금을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조활동자금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4. 결 론**

하지만, 현재 가축사육두수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조금제도 시행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지속된 돈가 하락 및 올해 전국적 돼지콜레라 발생,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돈육 소비량 감소추세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및 돈가 전망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조금제도의 조기 시행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 집



▲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면, 농가 스스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산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품목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축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자조금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양돈협회에서는 자조금제도의 조기 시행 및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 조기 개최의 필요성을 농협중앙회에 주지시키며 협조 요청을 구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도 현안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인지하여 오는 5월 27일에 양 단체 합의 하에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면, 농가 스스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산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품목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축산업

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자조금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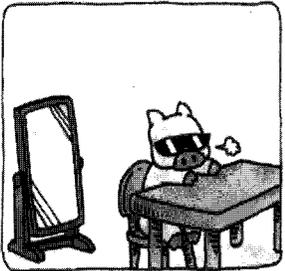
이제서야 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셈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번 준비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앞으로는 절대 한 단체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정으로 축산농가들을 위한 자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져 건

전하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양돈

재미로 보는 만화

멋있게 보이고 싶은 돼지



<자료 : 부처와 돼지2-있는 그대로 좋아>